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우 무

(본협회 방재연구부 차장)

(지난호에 계속)

4. risk제어(처리) 및 방법의 선정

기업이 risk에의 대처 방법을 검토해 가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두가지 점이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

(1)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여도 기업경영을 유지 할 수 있을 것.

(2) 위험관리에 요하는 cost를 낮게 억제하고 더우기 될 수 있으면 경상화할 것.

그림6의 표시와 같이 risk의 제어 방법에는 대별해서 경감, 전가, 자기부담의 3가지가 있으며 각각 cost가 관계되므로 3가지의 방법 중에서 적절한 대책을 선택하고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경감		cost
손해발생의 가능성(빈도) 및 결과	로서의 손해(규모)를 적게 한다.	○설비면의 안전, 방재 ⇒ 대책 cost
주 위험을 적게 하는 방법		○관리면(인건비등)을 포함한 running cost
전가		⇒ ○보험가입 cost
예상되는 손해의 일부 또는 대부분을 기업외에 부담시키는 방법.		○손해액 기타의 것 (복구비 포함)
자기부담		
기업 자신이 Risk를 부담한다. 즉 저립금, 준비금 혹은 경상비에 의해 위험을 부담하는 방법.		

(그림6) risk 처리방법과 cost

가. risk의 경감

이것은 risk의 취급을 제거하거나 작게 하는 방법이며 기업에서는 무엇보다도 힘을 들여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방법이다. 더구나 risk의 경감 때문에 cost를 들이면 그것만으로 자기 부담 cost는 작게 되거나 또는 전가 cost(보험료)가 작게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1) risk의 회피

당해 risk를 자사에서 보유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2) risk의 분산

이것은 한 기업 중에서 risk의 단위를 복수로 분할해서 가령 하나의 risk단위가 사고, 재해에 의한 손실을 입었어도 다른 risk단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 기업 전체로서의 risk경감을 도모하는 방법이다.

3) risk의 개선

이것은 말하자면 「안전대책」「방재대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risk빈도 및 규모를 적극적으로 작게 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risk의 감소에 대해서는 다음 두가지의 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 사고 발생 방지(사고의 발생, 그것을 방지) 와 손해 확대 방지(만일 사고가 일어날 경우 손해를 될 수 있는 한 작게 한다)의 두가지 대책을 병행해서 실시한다.

나) 물적 대책(risk에 노출되고 있는 것에 직접적으로 손을 가해서 경감을 도모하는 방법-방화벽의 설치, 안전장치의 장비등)과 관리적 대책(안전 교육의 실시, 보수관리의 철저등)과를 병행해서 실시 한다.

나. risk의 전가

risk자체를 감소되도록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예상된 손실의 일부 혹은 대부분을 기업외에 부담시키는 방법이다.

1) risk전가의 구체적인 예

가) 보험가입

나) 계약에 기초를 둔 risk 전가… 상대하는 거래선(상품구입선, 상품납입선, 청부운송자, 청부공사업자 등)과의 계약관계에 대해서 특정 risk의 특정 손실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계약서 상에 명기하는 등(물론 민법상의 제약이 있으며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방에게 부담시킨다고 하는 이유에서가 아니며 risk 전가의 한 방법으로서 유효하게 사용할 경우가 있다).

2) 보험가입에 의한 risk 전가의 특징

보험가입 및 후술하는 risk의 자기부담은 아무래도 risk가 사고, 재해로 되어서 표면화된 경우의 기업 재정면의 대책이라고(risk financing) 하는 것이며, 이중 특히 보험의 가입에 의한 risk의 전가대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risk management상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가) 불규칙 또는 대규모의 risk에 있어서도 보험(대수의 법칙)의 이용에 의해서 경상적인 cost로서 대처할 수 있다.

나) 보험은 각각 대상으로 하는 risk(사고 및 손해의 종류)를 명확화시키고 있다.

다) 재물의 손실 뿐만 아니라 휴업손실과 배상손실에서도 기업을 지키고 더우기 종업원의 복리후생의 일환으로서의 역할도 달성할 수 있다.

라) risk의 파악, 경감 대책 등에 대해서 정보제공을 보험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마) 사고발생의 경우에 보험금의 조기취득에 의해서 사고로 인한 간접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

다. risk의 자기 부담

risk의 자기 부담, 즉 손실을 스스로가 부담하는 방법이다. risk의 자기 부담중에는 그 risk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든가 risk의 크기를 과소평가한 때문에 불이익한 손실을 부담한다고 하는 「무계획자기부담」도 포함되며 통상 자기부담대책이라고 할 경우에는 적립금, 준비금 혹은 경상비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risk의 자기 부담이라고 하는 방법은 특히 그 발생빈도가 불확실하므로 대규모재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risk에 유호한 대책은 되지 않으며 물론, 자기부담부분을 어떻게 압축하는가가 risk management 성공의 point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5. 재평가 및 실시

가. 재평가

risk의 파악에서 제어방법의 선정까지의 일련의 step을 거친 후 두번째 전체적인 재평가, 조정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다. 이 작업에는 risk management에 요하는 total cost와 risk management의 실시에 의한 종합효과와의 balance를 취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것이다.

재평가작업은 사회경제환경의 변화, 1사의 사업내용과 조직의 변경 등 risk에 영향을 주는 제요인의 변화에 대응해서 상시 계속적으로 행하고, 상시 1사

의 risk management의 내용을 수정하여 적절하게 해갈 필요가 있다.

나. 실시

최후에 risk 제어방법의 구체적인 실시라고 하는 단계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실시에 있어서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1) 실시시기의 문제

가) 과연 작은 cost로서 risk 경감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공장, 빌딩 등의 신설계획시에 적합한 경감대책과 여러 내용을 담은 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설계면의 대책만의 문제가 아니고 관리적 대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검토하는 것이다.

나) 건설후에도 새로운 risk의 발견기술의 진보 혹은 법률의 개정 등에 의한 추가적인 경감대책을 시행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신중히 경감대책의 종류를 음미해서 긴급도, cost,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시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추가공사의 형태로서는 통상의 초기투자의 수배이상의 cost가 필요한 것도 있으므로 예산의 확보가 큰 문제가 되기도 한다.

2) 실시의 확인과 follow

가) 각종의 risk의 제어방법을 실시할 경우는 반드시 그 실시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 그 확인작업은 risk manager가 행하는 중요한 일로서 이 확인작업을 통해서 얻어진 문제점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은 risk의 파악에서 평가제어방법의 선정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작업에 feed-back 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 실시의 확인에 있어서는 관청, 보험회사 등의 제3자 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1사 자신에 의한 안정적인 확인작업(self-inspection)이 계속적으로 행해지지 않는 한 자사의 risk management의 level-up 성공은 기대할 수 없다.

6. 보험설계

risk처리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전가대책을 하는 경우 다음의 여러가지 점을 주로 하여 보험설계—보험에 의한 위험관리설계—를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생긴다.

(1) 보험종목, 계약방식의 선정

(2) 부보대상물건의 파악

(3) risk에 따른 요율의 경감조정

(4) 상기 (1)~(3)의 점검과 개선

이하 이들의 사항에 대하여 요점을 설명하면,

가. 보험종목, 계약방식의 선정

한 risk를 보험으로 담보하려는 경우 risk에 맞춘 담보가 가능한가를 요점으로 하여 각종보험, 계약방식 중에서 가장 적당한 것을 선정해야 한다. 손실의 형태와 대상에 따라 기업 risk를 담보하는 손해의 대상별 보험종목은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다.

특히 화재보험에는 각종 특약의 부대에 따라 계약방식을 합리화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의 검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험종목, 계약방식의 선정에 있어서는 각각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① 부보대상물건의 내용, 보험금액을 결정하는 방법 등에 관한 조건이나 제한

② 부대가능한 특약조항(담보 리스크에 관한 것 이외의 것)의 내용

③ risk 담보가 같을 때에는 계약조건(자동담보등)의 서어비스 내용

④ 다른 위험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

⑤ 양적으로 충분한 담보가 될 수 있는가의 check

나. 부보대상물건의 파악

부보대상물건의 파악은 보험설계의 토대가 되고 광범하고 상세한 파악을 필요로 하므로 그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목적마다의 내용과 범위

② 시가와 보험금액(직접손해와 간접손해 양면에서)

③ 사업장지에 의한 간접손해의 복구예상기간

④ 보험 가액에 대한 EML의 비율

다. 점검과 개선

보험관리의 철저를 위하여 부보상황의 점검과 개선의 필요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보험목적의 실태

복적마다의 내용, 범위, 보험금액 등의 상황은 기록을 남겨둠과 동시에 최신의 실태를 파악한다. 특히 건물, plant 증설, 수용품의 증가, 건물용도의 변경등과 같이 시간적 변화가 있는 경우, 체크에 유의한다.

2) 시가와 보험금액

초과보험, 일부보험, 부보누락유무를 체크한다.

3) 보험종목, 특약조항, 계약방식, 요율 등

보험의 종목, 부보누락 등 담보의 면과 요율의 경

감조정 등 합리적인 부보면에서 현장의 점검과 개선 여지의 유무를 검토한다.

라. 부보기준의 작성과 운용

이제까지 설명한 것은 효율적인 보험설계를 함에 있어 유의점을 말한 것이지만 이를 실제 운용하기 위하여는 보험설계상의 주요한 point를 부보기준 - 그 기업의 부보지침 - 으로 요약하여 이를 기업전체에 운용하도록 경영방침의 일부로서 결정함이 중요하다.

이에 의하여 조직화된 부보 주 부보정책의 확립이 가능하게 되며 그 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장점이 기대된다.

① 부보누락 등 보험처리상의 miss를 방지할 수 있다.

② 기업전체에 대한 통일 수준으로서의 보험커버가 가능하게 되고 통일적인 보험관리가 가능하다. 그 결과로 성과개선의 검토도 용이하게 된다.

③ 보험관리에 수속이 간단해 진다.

④ risk의 전가부분이 명확하게 되며 다른 대책에 의한 처리를 요하는 부분도 명확하게 파악하기 쉽다.

7. 결언

나날이 증가하는 위험에 경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위험관리의 매커니즘과 보험의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은 우선 그 조직내에 위험관리담당부서와 위험관리담당자를 두어 동업무를 책임지고 수행 할 수 있도록 경영자는 결심을 하여야 한다.

지금도 많은 기업에서 보험과 방화 및 안전관리를 각 부문별로 담당하는 사람은 많으나 기업경영이란 차원에서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을 종합하여 기업의 잠재위험에 대처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시행하여 왔으나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최근에 와서 몇몇 회사에서 겨우 시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위험관리는 「손실예방」(loss prevention)이 제일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기업과 손해보험회사가 공동으로 개발 실시할 때가 더욱 효율적이며 손해보험회사는 기업의 손실예방을 지원하고 기업은 손해보험회사의 「기술 서비스」를 적극활용할 때 한국에서의 위험관리는 참된 발전을 하리라 믿어진다.

